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절
최초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1.2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이 협정의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와 같이,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그 이동을 촉진하여, 자유무역지대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을 증진하고 투자 기회를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것이다.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세계무역기구협정의 후속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 서로에 대한 그들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제1항에 언급된 협정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1.4조 다른 협정의 언급

이 협정이 다른 협정 또는 법적 문서의 전체 또는 부분을 언급하거나, 언급하여 이 협정에 통합시키는 경우, 그 언급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관련 각주, 주해 및 주석을 포함한다.

제1.5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정부 및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제1.6조 영역적 적용

1. 한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된다.
2.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협정은 이스라엘의 영역에 적용된다.

제2절 일반 정의

제1.7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제9.31조(정의)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¹ 다만,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한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는 한국의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정관세를 포함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모든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준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가호에 정의된 것들을 포함하여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고,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그들 각자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 그리고 소호의 주 및

그 후속 개정을 포함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9.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 조치, 관행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대하여, 「국적법」 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², 그리고

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국민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²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협정에 따른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³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효 중인 모든 면제를 포함한다.